감정평가업자 추천서

본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**“하나개입구 ~ 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”**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.

2021 년 월 일

추천 감정평가 법인	
법인(지사)명	
감정평가업자 성명(연락처)	

연번	토지소재지 (동 지번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	연 락 처	서명 또는 날인
		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	

<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>

1)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
2)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방법은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해당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감정평가업자 추천서)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3) 허위로 작성 시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『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· 한국부동산원』 귀중